

무보험차량 운행 및 차량 무단방치 형사처벌 받습니다.

I. 무보험 자동차 운행

-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
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】

-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운행의 금지.

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.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】

-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**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】

※ 단, 무보험차량 운행 범죄 1건일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가능

▶ 무보험 자동차 운행 범칙금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, 제51조

구분	승용	승합	화물, 특수, 건설기계
비사업용 자동차	40만원	50만원	50만원
사업용 자동차	100만원	200만원	100만원
이륜 자동차	10만원		

II. 자동차 무단방치

-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하여 강제 폐차된 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자동차 무단방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【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】

※ 단, 자동차 무단방치 범죄 1건일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가능

▶ 무단방치 자동차 범칙금 : 자동차관리법 제85조, 제86조

범칙행위	승용 및 이륜자동차	승합, 화물, 특수	
		경형, 소형	중형, 대형
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	20만원	30만원	30만원
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	100만원	100만원	150만원

서구청 교통정책과 교통특별사법경찰팀

[문의처 ☎ 560-4960]